

1968년 4월 26일 제58회 중의원 사회노동위원회

○ 일시: 1968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 25분 개의

○ 발언자:

- 고토 도시오(後藤俊男)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 지쓰모토 히로쓰구(實本博次) 정부위원(후생성 원호국장)
-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국무대신(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내각관방장관, 외무대신, 후생대신)
- 핫타 사다요시(八田貞義) 위원장(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05804410X02119680426&spkNum=10¤t=9>

○ 해제(개요 및 특징)

고토 의원은 일단 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지적한 뒤, 위안부로 파견되었으나 전장에서 전투원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한 여성들을 원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것 인지에 대해 질의함. 이에 대해 후생대신은 실태 파악의 미비를 내세우며 원칙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하나, 이와 같은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함. 지쓰모토 원호국장 역시 군대와의 신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후생대신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의 입장을 줄곧 견지함.

○ 주요 내용 번역

- ▷ 핫타 위원장 “(전략) 내각이 제출한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戰傷病者戰没者遺族等援護法)」¹⁾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중략)”
- ▷ 고토 위원 “대신(大臣)께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 우선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²⁾ 당시 제일선, 이른바 전장(戰場)에 위안부가 상당수 파견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내밀하게 이들이 파견된 경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어떠한 계획에서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조사해보고자 꽤 고심했습니다만, 들리는 바에 따르면 무급군속(無給軍屬)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파견이 업자와 군 사이에서 ‘너희 쪽은 몇 명 파견하라’는 식의 반강제적인 형태로 파견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들 파견 위안부는 전

1) 원문에는 등(等)이 누락되어 있음.

2) 중일전쟁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전쟁 전체를 일컫는 말인데, 일제 패망 후에는 금기시된 용어임.

장에서 전투가 한창일 때나 적의 급습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간호부의 역할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탄약을 운반하는 등의 흡사 전투부대처럼 일한 실적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런 위안부에 대한 현재의 원호법 적용 문제에 관해서입니다만, 이것도 과거에 50~60명 정도 적용한 일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이나 형제가 전쟁터에 파견되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다지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참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터에서 어떤 때는 전투부대가 되고, 어떤 때는 총알을 나르고, 어떤 때는 병사들을 육체적으로 격려합니다. 이처럼 온갖 고생을 한 위안부에 대해, 원호법과의 관계, 지금까지의 경과, 더 나아가 앞으로의 문제에 관해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신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소노다 국무대신 “방금 지적하신 문제는, 그 실정이 해군과 육군에서 관계가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초기와 끝날 무렵에는 자격, 계약 등에서도 달라진 듯 보입니다. 또한 종전(終戰) 후 혼란스러웠던 때를 지적하시기도 하셨으나, 사안의 본질상 이를 원호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실태도 좀처럼 파악되지 않고 조사도 곤란하므로, 직접 이를 문제로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점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급군속 계약을 했다거나, 전쟁이 벌어지는 혼란한 시기에 후방근무를 했다거나, 탄약을 운반했다거나, 간호부의 역할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가급적 넓게 보아, 사무 당국에서도 장차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무언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침을 검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토 위원 “이쪽이 시끄러워서 지금 국무대신이 말씀하신 것이 잘 들리지 않는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 별도로 후생성(厚生省)이나 정부로서도 그러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 대해 원호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홍보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통지나 그밖에 대해서도 예시 등을 들어가며, 어떤 사안에 원호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주는 일 또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50명 내지 60명이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을 누군가에게 듣고, 들은 사람만 잘했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사람만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당시 대신도 군대에 계셨으니까, 위안부의 수에 대해서는 1,000명이나 2,000명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마도 수천 명의 위안부가 최전선에, 혹은 다른 수많은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희생자가 전부 제대로 파악되어 원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원호법의 적용 대상으로 한다면, 그 나름의 어떤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확실히 그런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 지쓰모토 정부위원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위안부라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호법의 원칙으로는, 아까 대신도 답변드렸듯이, 그와 같은 견지에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은 없고, 실은 그런 측면에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대신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현실에서 본래의 위안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 예컨대 1945년 4월 이후의 필리핀과 같은 상태를 생각해보면, 이미 그곳에 가 있던 위안부들은 충을 들고 함께 싸우거나 부상당한 병사들을 간호하는 일을 하도록 처리되었다고 할까요, 구분하여 따로 처리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투참가자 혹은 임시간호부 같은 신분으로 그런 일에 종사하다가 흩어져버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투참가자 혹은 군속으로 처우한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40~50건의 사례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실태는 의원께서 아까 잠깐이나마 언급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는 무언가 상당히 전선(前線)에 있는 장병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군이 상당히(꽤) 장려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군에서 보낸 여성과의 사이에 고용관계는 없으므로, 그렇게 전선에 있는 장병과의 사이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각기 금전을 수수한 일이 진행된 모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은 고용관계가 없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투가 벌어진 현지에서 시설이나 숙사(宿舎)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신분이 없으면 안 되므로 무급 군속이라는 신분을 부여하여 숙사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한, 그런 실태입니다. 현재 원호법의 대상자로 그러한 무급 군속은 다루지 않고, 전부 유급 군속, 유급의 고용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신분 관계가 없었다면 원호법의 대상으로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전투참가자나 종군간호부와 같은 임시간호부 신분이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견지에서 처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 중에서 아직 처우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원호법은 전부 신청주의(申請主義)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효(時效) 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원호법을 적용해나가고 싶다는 것이 현재의 원호국이랄까, 후생성의 태도입니다.”

(중략)

- ▷ 고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당시 최전선에 어느 정도의 위안부가 파견되었는지, 수천 명 정도 될 거라 짐작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가운데 방금 말씀하신 원호법을 적용할 만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지요. (후략)”

(중략)

- ▷ 고토 위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입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은 그러한 해당자가 있으면 원호법의 대상으로 하고, 나아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도 해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군속 쪽으로 들어가는지, 준군속 쪽으로 들어가는지, 또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 지쓰모토 정부위원 “경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시간호부, 종군간호부의 형태로 야전병원 등에서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 1항 2호의 ‘전직 육군 또는 해군 부내의 유급 촉탁원(囑託員), 고원(雇員), ’과 같은 군속으로 처우하게 됩니다.

그 밖에 필리핀 전쟁 말기처럼 전장의 한가운데서 위안부건 누구건 함께 목숨을 내놓고 일을 했거나 저항한 사람 또한 전투참가자가 되므로 준군속으로 처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